#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573

발의연월일: 2022. 7. 21.

발 의 자 : 윤영찬 · 강병원 · 강선우

소병철 • 이상헌 • 이용빈

이원욱 · 임호선 · 전혜숙

한준호 · 홍익표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위원회의활동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등).

#### 법률 제 호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중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국가기관의 장은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권고사항의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공개하여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종합보고서를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 ④ (생 략) 부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⑤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 -----국가기관 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 의 장은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 야 한다. 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 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 ⑥ -----기체 없 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 이 공개하여야----. -----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 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생략) (7) (현행과 같음)